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224호)

- 2001. 10. 15.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 6.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10. 8.
- 다. 상정일자 : 2001. 10. 15.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15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 가.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연장(60일⇒90일) (안 제24조제2항)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출산 전후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현행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임.  
(안 제24조제2항)

□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 운영12100-800(2001. 9. 26) 및 서울특별시 인사12141-3530 2001. 9. 28)호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2001. 11. 1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법령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나 참고될 사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각 동사무소등 소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직원이 장기휴가시 인력 보충 없이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 여성의 사회적 진출확대로 여성공무원의 인력과 역할등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조례가 2001. 11. 1 이전 개정공포되지 못할 경우 표준조례안의 부칙 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부칙내용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가정복지과 등 여직원이 많은 부서에서와 같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바 이에대한 대책과 각 동 및 실과에서 남자직원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출산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바 여직원이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정원외의 별도 인원으로 간주 총정원에 관계없이 신규직원을 임용할수 있지만 출산휴가90일만 사용할 경우 신규인원은 증원할수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직원이 업무대직을 하는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남자직원 부족에 따라 여직원도 남자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함.

질)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할 경우 공휴일을 포함한것인지 여부 및 근거와 이 개정안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의사일정 및 시일이 촉박하여 11월 1일 이전에 개정 공포될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안검토보고서의 부칙내용처럼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 출산휴가기간 90일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이개정안이 2001년 11월 1일 이전 통과되기 어려울 때에는 수정안에 동감

질) 현재 출산휴가자 신청인원과 출산휴가자 발생시 업무대직으로 남자직원 등 타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

답) 2001년 10월 6일 현재로 출산휴가자는 3명이며 출산휴가로 인한 타직원의 업무대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직원이 서로 협조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 정길자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내용인 “이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함. (의제성립)

6. 수정안의 요지 : 별 첨.

7. 심 사 결 과 : 수정기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